

CR 2010 - 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0. 9

류건식·이상우

CEO
Report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0. 9

류건식·이상우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

I. 검토배경	1
II. 퇴직금 중간정산 실태 및 제반문제	2
1. 중간정산 현황	2
2. 중간정산 원인	4
3. 중간정산의 제반문제	6
III.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규정 및 특징비교	11
1. 관련규정	11
2. 기능비교	12
3. 해외사례	13
4. 특징 및 시사점	16
IV. 개선과제	17
< 참고문헌 >	21

I. 검토배경

□ 최근 기업 및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중간정산이 퇴직연금 활성화의 핵심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부채경감 및 근로자의 비상시 자금수요를 적절히 분산시킬 수 있는 중도인출이 제한되는 등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강조된 나머지 경직되어 운영됨.

○ 퇴직연금 가입 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니즈증대로 인해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중간정산제도는 법정퇴직일시금제도에서 근로자수, 근속연수 및 임금의 증가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퇴직금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자 기업의 요구로 1998년에 도입됨.

□ 특히 퇴직보험 종료에 따른 중간정산 급증으로 노후생활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퇴직연금의 기능 및 역할저하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반와해마저 우려됨.

○ 퇴직연금 활성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기초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존재함.

□ 본 연구는 중간정산 실태 및 원인, 중간정산시 문제점, 중간정산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에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Ⅱ. 퇴직금 중간정산 실태 및 제반문제

1. 중간정산 현황

- 노동부의 조사결과 등¹⁾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급여의 소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2008년 실태조사 결과, 법정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70.8%가 중간정산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어 2006년의 68.3%에 비해 2.5%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중간정산을 실시한 기업 비율

(단위: %)

연 도	2006년(N=360)	2008년(N=500)
응답률	68.3%	70.8%

자료 : 노동부(2006) 및 노동부(2008)

- 업종별 중간정산 실시 기업체수를 보면, 제조업의 77.4%가 중간정산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건설업(66.1%), 서비스업(65.0%) 순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제조업이 건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기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간정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 중간정산의 현황과 원인에 대해서는 노동부,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실태 조사보고서, 2006.12 및 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도입·운영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2008.12, 보험연구원, '퇴직보험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2009.10 등에 의거 작성

<표 2> 업종별 중간정산 실시 기업 비율

(N=500)

업 종	실 시	미 실시
제조업	77.4%	22.6%
서비스업	65.0%	35.0%
도소매업	61.5%	38.5%
건설업	66.1%	33.9%
기 타	75.0%	25.0%

자료: 노동부(2008)

□ 또한 근로자 수가 많고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일수록 중간정산을 보다 많이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50.6%의 기업이 중간정산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수 100인이상 기업의 80%이상이,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84%이상이 중간정산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됨.

<표 3> 중간정산 실시 기업의 속성별 비교

속성별	기업 규모	실시 기업 비율	미 실시 기업 비율
전체	(N=500)	70.8%	29.2%
근로자수	9명 이하	48.4%	51.6%
	10-49명 이하	69.6%	30.4%
	50-99명 이하	79.2%	20.8%
	100-299명 이하	80.2%	19.8%
	300명 이상	81.8%	18.2%
노동조합 유무	있음	84.4%	15.6%

자료 : 노동부(2008)

□ 특히 상당수 기업이 근로자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기적인 중간정산 실시가 퇴직연금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4> 중간정산 실시 형태

(N=354)

속성별	정기적으로 실시	근로자 요구	사규 요건 충족시	기타
응답률	36.4%	50.6%	6.5%	6.5%

자료: 노동부(2008)

2. 중간정산 원인

- 중간정산이 일반화된 근본적인 이유는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메리트를 강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목돈 및 기업의 자금부담 해소 니즈가 증대하였기 때문임.
-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해서(54.8%), 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서(21.5%),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정리 차원에서(16.7%)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중간정산 실시 원인

(N=354)

이유	근로자의 목돈 필요	기업의 경영개선 차원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정리 차원에서	기타
비율 (응답율)	54.8%	21.5%	16.7%	23.5%

자료 : 노동부(2008)

- 특히 영세기업(9인 이하 근로자)의 경우 누적되는 '퇴직부채 해

소 등 경영개선 차원에서 실시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6> 기업 경영개선을 위해 중간정산 실시 기업 규모별 비율
(N=354)

	9명 이하	10~49명 이하	50~99명 이하	100~299명 이하	300명 이상
사례수(N)	31	174	57	65	27
응답률	38.7%	23.6%	19.3%	10.8%	18.5%

자료 : 노동부(2008)

☐ 근로자의 목돈 필요로 중간정산을 실시한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남.

<표 7> 목돈 필요로 중간정산 실시한 기업 비율
(N=354)

업 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응답률	68.8%	56.8%	41.7%	38.8%	43.8%

자료 : 노동부(2008)

☐ 이러한 중간정산 자금을 퇴직연금제도로 흡수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2009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²⁾, 기업들은 대체로 퇴

2) 퇴직보험을 해지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1,679개 기업 중 3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직연금세제의 확대와 더불어 중도인출 조건의 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퇴직연금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표 8> 퇴직연금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N=314, 1,2,3순위 복수응답)

제도 개선 사항	기업 및 근로자 세제지원 확대	중도인출 조건완화 및 중간정산제도 폐지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강화	노후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제도 형태 및 운영 구조의 다양성
비율	108.0%	52.4%	39.2%	30.3%	28.3%

자료 : 보험연구원(2009)

☐ 또한 많은 기업들은 중간정산제도 폐지 및 중도인출 조건완화 등이 퇴직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고 있음.

○ 퇴직연금 미가입기업의 경우도 중간정산제도의 실시가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³⁾

3. 중간정산의 제반문제

가. 개인의 노후생활 리스크 증대

☐ 자금의 사전확보, 일시적인 단기자금 필요 등으로 인해 중간정산이 이루어져 연금재원이 소진되는 경우, 개인의 노후생활(생존리스크) 대비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음.

3) 중간정산제도의 실시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 34.8%, '그렇지 않다' 23.6%, '보통이다' 41.6%로 응답함[노동부(2008), N=250].

○ 재직 중인 근로자의 대다수가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통해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Option)이며 혜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

□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연구원이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 및 투자보다 생활비, 부채해결 등과 같은 단기성 지출에 중간정산 자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중간 정산한 자금이 생활비 등과 같이 근로자의 은퇴후 소득보장과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부분이 지출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제도의 역할이 중요시됨.⁴⁾

<표 9> 중간정산 퇴직금 사용처

(N=55, 복수응답 포함)

사용처	노후자금으로 저축 또는 투자	생활비, 내구재 구입 등의 지출	자녀 교육비로 지출	자녀의 결혼자금 및 주택자금	부채 해결	장기 부동산 및 주식 투자	단기적인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	기타
비율	6.7%	60.0%	26.7%	10.0%	56.7%	23.3%	3.3%	6.7%

자료: 보험연구원(2009)

□ 또한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중간정산을 시행하는 경우, 자금 수요 니즈가 전혀 없는 근로자까지 중간정산 하는 결과를 초

4) 근로자들이 노후생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보거나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노후대비를 개인의 책임으로 맡겨둘 경우 노후에 빈곤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의 책임 하에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퇴직연금을 강제화하여 공적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김성숙외 6인 ‘공적연금의 이해’, 국민연금연구원, 2008.12, pp. 11~12 참조).

래해 자칫 자산관리나 투자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⁵⁾

- 이 경우 중간정산에 따른 근로자들의 노후 불안과 근로의욕 저하로 기업의 근무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의 기능 와해

□ 퇴직금제도는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World Bank 등 국제기구가 근로자의 적정소득대체율로 국민연금 30~40%, 퇴직연금 30%수준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과 역할은 중요시됨.

<표 10> 국·내외 노후소득보장수준 비교

(단위: %)

보장구분		WB 권고수준	미국	영국	일본	한국
1층	국민연금(a)	30 ~ 35	41	31	34	25
2층	퇴직연금(b)	30 ~ 35	38	39	26	12
3층	개인연금(c)	10 이상	10(가정**)			8
합계(a+b+c)		70~80	89	80	70	45

주 : 해외의 경우 개인연금에 대한 관련자료가 없어 권고수준인 10% 가정
 자료 : OECD, KDI, 보험연구원

□ 그럼에도 중간정산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대체기능이 상실될 경우, 3

5) 이러한 현상은 국민은행의 전체직원 1만 8,000명 가운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가 8,500명에 이르는 등 중간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음.

충 노후소득보장체계 자체가 와해될 우려가 있음.

○ 2007년 기준으로 GDP 대비 퇴직연금 적립자산비율은 미국 76.7%, 일본 20.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1%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⁶⁾

□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정산으로 인한 연금재원 사전유출은 사적연금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다. 법 논리 적용상의 문제 대두

□ 퇴직금에 대한 법적 논리는 공로보상설, 생활보장설, 임금후불설 중에서 대체로 임금후불설에 근거하고 있으며 임금후불설이 정설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임.

○ 공로보상설은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 생활보장설은 생활안정지원, 임금후불설은 재직중 임금에 대한 후불적 개념 등에 기초하고 있음.

□ 그럼에도 퇴직금은 장래 도래시기가 불확실한 퇴직시점에 지급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임금과 구분되어질 필요성이 있음.

○ 퇴직금은 노후생활 자금확보를 위한 사회보장수단의 하나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수급권에 대해 불가침적 귀속권한을 부여한 것임.

□ 이러한 점에서 퇴직금의 임금후불설적 논리가 중간정산제도라

6)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9

는 임시적인 제도에 의해 훼손되는 것은 엄격한 법 논리의 적용상 문제가 존재함.

- 특히 중간정산시 퇴직소득세를 적용하여 과도한 세제혜택까지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화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Ⅲ.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규정 및 특징비교

1. 관련규정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에 의하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 구입시,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시,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 충족시에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음.

○ 기존 퇴직금제도와 퇴직보험·신탁에서는 근로자가 긴급자금을 필요로 할 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11> 중간정산·중도인출·담보대출 관련규정 비교

	중간정산	중도인출	담보대출
관련 규정	-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요구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 - 중간정산에 대한 제한적 규정이 전무	- 무주택자주택구입시,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요양시 등으로 한정 - 중도인출에 따른 패널티관련 규정 전무	- 퇴직연금적립금의 50%범위 내에서 담보대출 허용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으로 한정
관련 제도	퇴직금, 퇴직보험	DC형, IRA	모든 퇴직연금
근거	근로기준법 및 근로법 제9조 (퇴직금 중간정산사유)	근로법 제11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사유)	근로법 제8조 (퇴직연금수급권의 담보제공사유)

□ 또한 퇴직연금제도상의 담보대출 요건은 다소 엄격하여 근로자의 긴급생활자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담보대출의 한도를 개인별 적립금의 50%로 제한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는 담보대출을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로 담보권 설정·실행, 상계처리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 부재 등을 들 수 있음.

2. 기능비교

□ 기업은 부채를 청산할 수 있어 중간정산을 선호하며 근로자 역시 중간정산을 통해 필요자금을 적시에 조달할 수 있어 중간정산이 가능한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에 비해 긴급자금 동원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

<표 12> 제도간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의 기능차이

구 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간정산 (중도인출)	- 퇴직금 누진효과 상실 - 근로자의 필요자금 확보에 유리한 반면, 노후재원 확보곤란	- 퇴직연금 누진효과 상실 - 근로자의 필요자금 확보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반면, 노후재원은 유지
담보대출	- 퇴직금 누진효과 유지 - 기업에 따라 담보대출을 해주는 경우 존재	- 퇴직연금 누진효과 유지 - 적립금의 50%범위 내에서 담보대출 가능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실행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노후생활보장이라는 퇴직연금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며 DC형 퇴직연금에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함.

○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노후재원 자체의 소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연금 본래의 기능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유리하며, DB형과 DC형 모두 가능한 점이 장점임.

○ 다만 담보권 설정, 상계,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결되어 있어 절차와 실행이 복잡하며 실행 단계별로 이해상충이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표 13> 중도인출과 담보대출간의 장단점비교

구 분		중도인출	담보대출
해당제도		- DC형만 가능	- DC형 및 DB형 모두 가능
특 정	장 점	- 절차와 실행의 편리성	- 연금본래의 기능유지
	단 점	- 적립금 인출로 연금 본래의 기능저해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결되어 있어 절차와 실행이 복잡

3. 해외사례

□ 미국은 근로자 이직시 개인퇴직계좌로의 이관을 통해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 근로자 이직시 그간의 부여된 수급권의 비율에 따라서 연금 또는 일시금이 정산되나, 이를 개인퇴직계좌에 이관하여 정년 퇴

직시까지 연금으로 계속 적립하고 있음.

- 퇴직연금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DC 및 IRA제도는 중도인출사유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59.5세 이하일 경우 세제혜택을 박탈하고 10%의 패널티를 부과함.
- 다만 퇴직연금 가입자가 59.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장애사고가 발생하여 고액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무주택자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함.

<표 14> 주요국의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규정

구 분	미 국	일 본	호 주	홍 콩
중도인출	제한적 허용 (SEP-IRA 등)	제한적 허용 (DC형)	제한적 허용 (장애 등)	제한적 허용 (장애 등)
담보대출	일부 허용	불허	불허	불허

□ 일본은 DC형에 한해 제한적으로 중도인출만 허용하고 있는 반면, 담보대출은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호주는 영구 또는 일시적 장애, 경제적 궁핍, 이민, 정상참작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치료, 주택담보대출연체로 인한 강제경매방지, 장례 및 매장비용 등 일정한 사유시에만 중도인출 허용
- 영국의 경우 담보 대출제도가 없으며 스위스는 주택구입과 영구적 국외이주에 한해서 중도인출 허용

□ 홍콩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립된 기금은 법정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까지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규정

- 다만, 60~64세 사이 조기 퇴직할 경우, 사망 혹은 영구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난 1년간 기여실적이 전혀 없고 적립금이 소

액(5,000 홍콩달러)일 경우 예외 인정

□ 이처럼 선진국은 개인퇴직계좌 활성화,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의 제한 등을 통해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대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음.

○ 또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여 퇴직연금가입률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시키고 있음.

○ 현재 아시아 2개국, 유럽 9개국, 미주 1개국 등 총 11개국이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의무화를 통해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임.

<표 15> OECD 회원 30개국 중 강제 퇴직연금제도 운영국가

구 분	국가명
오세아니아(2개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9개국)	덴마크, 헝가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미주(1개국)	멕시코

자료 : Pension at a Glance 2009, OECD.

- 퇴직연금 의무화유형: 사용자기여 의무화(호주, 스위스, 아이슬란드)유형, 근로자기여 의무화(덴마크, 멕시코, 헝가리, 스웨덴)유형, 단체협약을 통한 의무화(네덜란드)유형 등으로 구분
-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자동가입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퇴직연금의 준의무화를 추진중에 있음.

4. 특징 및 시사점

- 선진국이 퇴직적립금의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선택권보다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다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기조가 존재하기 때문임.
- 우리나라와 같이 법정퇴직금제도내의 중간정산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급여를 임금후불개념이 아닌 사회보장개념에 입각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특징이 존재함.
-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중간정산제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함.
- 그럼에도 법정퇴직금제도하에서 퇴직연금가입을 임의선택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왔다는 문화적 환경 차이 및 그 특수성은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결과적으로 중간정산제, 중도인출제, 담보대출제의 적용기준은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라는 큰 틀안에서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즉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 제도개선이 시급이 요구됨.

IV. 개선 과제

1. 중간정산제 점진적 폐지

- ☐ 노후생활자금 조기인출·소비라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퇴직누적금 경감이라는 기업측의 이해, 긴급자금 마련이라는 근로자측의 이해가 맞물려 중간정산이 확대되어 왔음.
- 기업의 퇴직금 부담감소, 퇴직금제도에서의 수급권보장차원에서 중간정산제가 도입되었지만 중간정산이후 노후자금소진 등으로 제도의 유용성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 따라서 중간정산제 남발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기반와해 등을 고려하여 중간정산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즉 중간정산제도를 단기간내 폐지시 기업 및 근로자의 선택권 제한과 법적 안정성 문제 등이 존재하므로 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단계적인 폐지가 요구됨
 - 중간정산제도의 폐지 필요성은 근로자의 6.7%만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퇴직연금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중간정산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보험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음.
- ☐ 중간정산제도의 폐지는 제한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단계, 법정퇴직금의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단계, 완전히 폐지하

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음.

- 제한적 허용단계(제1단계) : 노사의 합의를 전제로 하며 누진제 폐지 등 퇴직금제도 개편의 경우로 한정
- 세제혜택 폐지단계(제2단계) : 현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 조세체계를 폐지하고 일반소득세를 부과
- 완전 폐지단계(제3단계) : 법적·제도적으로 퇴직금제도상에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조항 삭제

2. 체계적인 중간정산 보완장치 마련

- 중간정산제의 점진적 폐지로 직면하게 되는 기업의 기업부담과 근로자의 필요자금 확보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간정산제의 보완조치 마련이 필요함.
 - 우선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퇴직연금제도로 이관하는 근로자에 대해 연금세제의 차등화(소득공제 및 연금세제 폭 증대) 등을 통해 연금세제상의 혜택을 적극 부여할 필요성이 존재
 - 기업의 경우는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세제지원방안이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중간정산제 점진적 폐지의 보완조치차원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은 현행보다 다소 완화해 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중도인출 요건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진국에 비해 다소 완화해 줌으로써 중도인출이 중간정산을 대체하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간정산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자금 대출제도의 도입, 이관성(Portability)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함.
- 중간정산제도가 지니는 폐단 및 동제도의 폐지시 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한다고 하는 자세의 전환이 요구됨.

3. 장기적으로 퇴직연금가입 의무화 추진

-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노후소득보장 확대차원에서 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퇴직연금가입을 강제화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
- 선진국의 경우 퇴직연금도입초기 임의가입방식을 적용하였으나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제도개혁과정에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의 대체용으로 가입을 의무화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임.
- 우리나라도 신설사업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호주 등처럼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퇴직연금중심으로 퇴직급여단일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즉 현행 퇴직연금 임의가입방식에서 퇴직연금 의무가입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여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존재함.

– 호주는 1992년에 강제가입 DC형보충퇴직연금(Superannuation) 제도를 도입하여 전체 근로자의 90%(시간제근로자 포함)가 가입함으로써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크게 제고됨.

□ 퇴직연금 의무화는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기업규모(영세기업→중소기업→대기업), 기여형태(사용자 기여분 의무화 → 근로자 기여분 의무화) 등을 고려한 단계별 의무화가 필요함.

<표 16>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

구분	1 단계	2단계	3단계
기업규모별	영세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4인 이하 기업	4인 이상 기업	
기여형태별	사용자 기여분 의무화	근로자 기여분 의무화	

□ 퇴직연금 가입의무화 등으로 제도가 정착되는 단계(성숙)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차원에서 미·일 등 선진국 수준의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관련 규정 마련이 요구됨.

○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연금제도 성숙기에는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여 연금재원의 소진을 최소화하고 일시금보다 연금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제반 규정 강화

<참고문헌>

- 김성숙 외, 『공적연금의 이해』, 국민연금연구원, 2008.12.
- 김원식·신문식,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실태 조사보고서』, 노동부, 2006.12.
- 김원식·신문식, 『퇴직급여제도 도입·운영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노동부, 2008.12.
- 류건식·이봉주, 『퇴직연금론』, 박영사, 2006.
- 류건식·이상우,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CEO Report 2009-4)』, 보험연구원, 2009.10.
- 류건식·이상우·이창우,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보험연구원, 2010.3.
- 방하남,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역할분담』, 한국개발연구원, 2005.12.
- 방하남 외,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채권보장 개편방안 II』, 연구보고서, 노동부, 2006.12.
- 위경우 외, 『퇴직연금 활성화 과제 법제화 방안 연구』, 노동부, 2008.12.
- 이순재 외, 2005,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제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 노동부, 2005.3.
- 국민연금연구원, 『외국의 연금제도』, 국민연금관리공단, 2006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 실태분석 및 향후과제』, Survey Report, No1, 2008. 6.
- 보험미래포럼, 『연금의 진화와 미래』, 논형출판사, 2010.6
- 高岐康雄, 『歐米生保における企業年金法上の受託者責任』, 保険學雜誌 第575号, 日本保險學會, 2001.12.
- 中島富三, 『確定醵出年金』, 國政情報センター 2002.8.
- 田村正雄, 『確定醵出年金制度の運用實態に関する調査研究』, 厚生勞動

省, 2004.3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9.

_____, Private Pensions Outlook 2008.

_____, 2005, "Pensions at a Glance: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OECD Private Pensions Series*, 2007.

World Bank Report, "Averting the Old Age Crisis: Policies to Protect the Old and Promote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ension Commission, "A New Pension Settlement for the Twenty-First Century: The Second Report of Pensions Commission", London Stationary Office, 2005.

저 자 약 력

류 건 식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계리사

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keon@kiri.or.kr)

이 상 우

일본 中央大學 상학 석사

홍익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swlee@kiri.or.kr)

CEO Report 2010-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발 행 일	2010년 9월 일
발 행 인	김 대 식
발 행 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 쇄 소	(주)유성사 대표전화 2268 - 0676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
(☎3775-9013)로 하여 주십시오.